

출연받은 주식 사용한도

Q 예를 들어 본원은 공익법인으로 한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당시 시가 1천만원의 상장주식을 기부받았을 경우, 기부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800만원으로 감소했을 경우에
질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현 시점에서 매각할 경우 기준금액이 취득당시 시가인 1천만원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손실 200만원 제외하고 매각 시 수령가능한 8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A 출연받은 재산중 현금 이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벽화

Q 회사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사 내.외부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비용은 27백만원 들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계정과목은 해당 지출의 목적에 맞게 반영하시면 되므로, 홍보목적의 벽화제작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자산성 있으면 일부는 설비 반영 후 3년내 감가상각 등)

잡이익으로 처리한 이익에 연관된 비용 처리 질의 건

- Q** 계정 질의 드리고자 Q&A 남깁니다.
자사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한 수익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용역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였으니 이에 맞추어 비용을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아니면 용역수수료나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반영하였어도 관련 비용에 대해 용역수수료 또는 잡손실 어느쪽으로 반영해
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편리한 쪽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스크랩 전용계좌 관련 문의

- Q** 거래처에서 철 스크랩 거래 보증금을 스크랩 전용계좌로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스크랩 전용계좌를 고철 대금 결제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스크랩 전용계좌의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가급적 스크랩 거래 전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 Q**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
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